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3. 10. 11.>

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

(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)

<table>
<tr><th>의료 시설</th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본인 부담 비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1. 보훈 병원</td><td colspan="2">가. 요양급여비용</td><td>(요양급여비용 총액 −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) × 10/10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나. 비급여비용</td><td>(비급여비용 총액 −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) + (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× 10/100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2. 위탁 병원</td><td rowspan="2">가. 진료비용</td><td>1) 요양급여비용</td><td>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+ [(요양급여비용 총액 −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−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) × 10/100]</td></tr>
<tr><td>2) 비급여비용</td><td>(비급여비용 총액 −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) + (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× 10/100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나. 약 국약제비</td><td>1) 요양급여비용</td><td>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+ [(요양급여비용 총액 −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−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) × 10/100]</td></tr>
<tr><td>2) 비급여비용</td><td>(비급여비용 총액 −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) + (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× 10/100)</td></tr>
</table>

비고

1. 요양급여비용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
2. 비급여비용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용